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19
----------	-----

제출년월일 : 2009. 1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이유

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원활하게 운영코자 함.

□ 주요내용

- 가. 자연재난대책기간을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제3호)
- 나. 총괄조정관의 직급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통제관의 직급을 분야별
재난관리담당국장으로, 담당관의 직급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 다.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및 약칭에 관
한 사항 개정 함.

□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1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계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를 “태풍정보 또는 호우·대설주의보의 발령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계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또는 인적재난의 발생우려가 있는 단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을 “본부장”을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사태 진압”을 “사태수습”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위원은 다음과 같다”를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 행정부시장

제17조제10호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기반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분야별 재난관리담당국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과장”을 “분야별 재난관리담당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담당”을 “과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를 “제2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대한적십자사 시지사”를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39조의 제1항”을 “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외의 부분 및 제4호·제2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제3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32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4조제5호·제5조제2항·제9조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4조제6호·제30조제6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u>」(이하“<u>법</u>”이라 한다) 및 <u>같은법시행령</u>(이하“<u>영</u>”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인천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인천광역시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 「<u>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u>」 및 <u>같은 법 시행령</u>-----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재난”이라 함은 <u>법</u> 제3조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인적재난”이라 함은 <u>법</u> 제3조 제1호나목 및 <u>영</u>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u>영</u> 제13조 <u>각호</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u>각호</u>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단서 <u>신설</u>>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 2. ----- 「<u>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u>」(이하 “<u>영</u>”이라 한다)----- 3. ----- <u>각 호</u>----- ----- ----- <u>각 호</u>----- ----- <u>다만,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u>본부장</u>”이라 한다)은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p>가·나. (생략)</p> <p>4. “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u>각호</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p> <p>5. “준비단계”라 함은 자연·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u>각목</u>의 단계를 말한다.</p> <p>가. (생략)</p> <p>나.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u>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u></p> <p>다. <u>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u></p> <p>6.~10. (생략)</p> <p>11. “대응단계”라 함은 기반재난으로 인해 기반체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마비가 우려되거나 마비된 경우로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u>사태 진압과 긴급대응을 위한 대체자원(인원·장비·물자)지원과 기반체계의 보호대책 마련 및 통합지원의 요청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u></p>	<p>가·나. (현행과 같음)</p> <p>4. ----- -----<u>각 호</u>----- ----- ----- -----</p> <p>5. ----- ----- <u>각 목</u> ----- -----</p> <p>가. (생략)</p> <p>나. ----- ----- <u>태풍정보 또는 호우·대설주의보의 발령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또는 인적재난의 발생우려가 있는 단계</u></p> <p>다. <u>본부장</u>----- ----- -----</p> <p>6.~10. (현행과 같음)</p> <p>11. ----- ----- ----- -----<u>사태수습</u>----- ----- -----</p>

현행	개정안
<p>12.~14. (생략)</p> <p>제4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p> <p>1.~4. (생략)</p> <p>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u>당해</u>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p> <p>6. <u>기타</u>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p> <p>제5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u>위원은 다음과 같다.</u></p> <p>1. <u>인천광역시장(위원장) 및 행정부시장(제9조의 실무위원회 위원장)</u></p> <p>2.~8. (생략)</p> <p>② 위원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u>당해</u> 위원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9조 (실무위원회) ① (생략)</p> <p>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u>당해</u>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p>	<p>12.~14. (현행과 같음)</p> <p>제4조 (기능) ----- -----</p> <p>1.~4. (현행과 같음)</p> <p>5. ----- <u>해당</u>----- -----</p> <p>6. <u>그 밖에</u> ----- -----</p> <p>제5조 (구성 등) ① ----- ----- ----- <u>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u></p> <p>1. <u>시 행정부시장</u></p> <p>2.~8. (현행과 같음)</p> <p>② ----- ----- ----- ----- <u>해당</u> ----- -----</p> <p>제9조 (실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해당</u> ----- -----</p>

현행	개정안
<p>③·④ (생략)</p> <p>제17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p> <p>1.~9. (생략)</p> <p>10. 법 제14조의 <u>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기반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u></p> <p>제19조 (구성 등) ① 대책본부에는 다음과 같이 본부장과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을 둔다.</p> <p>1.2. (생략)</p> <p>3. 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은 <u>분야별 재난관리담당국장</u>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p> <p>4. 대책본부의 통제관은 <u>시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과장</u>이 되며,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p> <p>5. 대책본부의 담당관은 <u>시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담당</u>이 되며, 소관분야 통제관을 보좌한다.</p> <p>②·③ (생략)</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7조 (설치 및 기능) ----- ----- ----- ----- -----</p> <p>1.~9. (현행과 같음)</p> <p>10. -----<u>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u>-----</p> <p>제19조 (구성 등) ①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u>기획관리실장</u>----- -----</p> <p>4. ----- <u>분야별 재난관리담당국장</u>----- -----</p> <p>5. ----- ----- <u>과장</u>----- -----</p> <p>②·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21조 (재난대비체제)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p>	<p>제21조 (재난대비체제) ----- ----- ----- ---- 제2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 ----- ----- -----</p>
<p>제23조 (협조체제 구축 등) ①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재난관리책임기관, <u>대한적십자사</u> <u>시지사</u>·<u>전국재해구호협회</u>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②~④ (생략)</p> <p>⑤ <u>부장</u>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19조제3항의 실무반에 파견되는 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p> <p>⑥·⑦ (생략)</p>	<p>제23조 (협조체제 구축 등) ① ---- ----- ----- -----<u>대한적십자사</u> <u>인천광역시지사</u>----- ----- ----- -----</p> <p>②~④ (현행과 같음)</p> <p>⑤ <u>본부장</u>----- ----- ----- -----</p> <p>⑥·⑦ (생략)</p>

현행	개정안
<p>제24조 (인력·물자 및 장비 등 동원 체제 구축) ① 본부장은 <u>법 제39조의 제1항</u>의 규정에 의한 인력·물자·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24조 (인력·물자 및 장비 등 동원 체제 구축) ① ----- 법 제39조 제1항-----</p> <p>-----</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6조 (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다음 <u>각호</u>의 모두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p> <p>1.~5. (생략)</p>	<p>제26조 (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u>각 호</u>-----</p> <p>-----</p> <p>1.~5. (현행과 같음)</p>
<p>제30조 (기능) 자문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p> <p>1.~5. (생략)</p> <p>6. <u>기타</u>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등</p>	<p>제30조 (기능) -----</p> <p>-----</p> <p>1.~5. (현행과 같음)</p> <p>6. <u>그 밖에</u> -----</p> <p>-----</p>
<p>제31조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 위원은 다음 <u>각호</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1.~3. (생략)</p> <p>② (생략)</p>	<p>제31조 (구성) ① -----</p> <p>-----</p> <p>-----</p> <p>----- <u>각 호</u>-----</p> <p>-----</p> <p>1.~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32조 (임기 등)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u>각호</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1.~3. (생략)</p>	<p>제32조 (임기 등) ----- ----- --- <u>각 호</u>----- ----- ----- ----- -----</p> <p>1.~3. (현행과 같음)</p>
<p>제35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u>기타</u>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35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 ----- ----- <u>그 밖의</u>----- -----</p> <p>② (현행과 같음)</p>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 ○ ○ ○ ○ ○
실·국별 의견수렴결과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 '09.10.5 ~10.25 ○ 방 법 - 의견수렴		“해당사항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자	의견수렴결과	반영여부
○ 기 간 - '09.10.5 ~10.25 ○ 방 법 - 시보 및 인터넷 게시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취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정의) ○ 제11조(지역위원회) ○ 제12조(지역위원회의 기능) ○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제17조(지역본부장의 권한 등) ○ 제19조(종합상황실 등의 설치·운영) <input type="checkbox"/>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재난의 범위) ○ 제23조(종합상황실 및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의 설치·운영) <input type="checkbox"/>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정의) ○ 제4조(중앙대책본부 구성원 등 임무) <p style="text-align: center;">“별 첨”</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태풍·홍수·호우(호우)·강풍·풍랑·해일(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 다.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해외재난”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라 함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재난관리업무를 행하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6. “긴급구조”라 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과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행하는 인명구조·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라 함은 소방방재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의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함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11조 (지역위원회) ①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시·도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속하에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부의되는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 (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16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해당 관할구역안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 다만, 당해 재난과 관련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 (지역본부장의 권한 등) ①지역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은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종료될 때까지 지역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제19조 (종합상황실 등의 설치·운영) ①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소방서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시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상황실 및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과의 정보관리체계의 연계와 정보공유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 (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제23조 (종합상황실 및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의 설치·운영)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종합상황실 및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전파와 재난대비 자원의 관리·지원을 위한 재난 방송 및 정보통신체계
 2. 재난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운영·관리체계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에 한한다) 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종합상황실에 한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소방서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종합상황실 및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의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236호)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인적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 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 “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당해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준비단계”란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 가.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 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대설주의보의 발령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또는 인적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계

다.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본부장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6. “비상단계”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의 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으로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인적재난이 발생한 단계 또는 중앙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제4조 (중앙대책본부 구성원 등 임무) ①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에 두는 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괄조정관 : 비상단계에 실무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본부장 및 중앙대책본부의 차장을 보좌함
2. 통제관 : 준비단계에 실무반 업무를 총괄하고 비상단계에 총괄조정관을 보좌함
3. 담당관 : 소관 사무에 대하여 통제관을 보좌함
4. 실무반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

②법 제19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사전대비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 중에는 소방방재청의 종합상황실업무를 총괄하여 청장을 보좌한다.